

1. 업무개요

- 개념 : 연구과제 변경사항 승인·통보 방법 및 계좌 이자사용 방법
- 시기 : 상시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
 -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
 -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,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
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연구비관리지침
- 관련부서 : 연구지원팀

2. 변경 승인 및 통보 방법

■ 전문기관 사전승인 절차

- 1) 변경내역(변경 전·후 대비표, 변경 사유)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(세부, 위탁, 협동, 참여과제일 경우)에 공문을 통해 승인 요청
- 2)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승인 공문 수신
- 3)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수행기관 내부변경 승인

■ 전문기관 통보(보고) 절차

- 1) 수행기관 내부변경 승인 후, 즉시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(세부, 위탁, 협동, 참여과제일 경우)에 공문을 통해 변경내역(내부 변경완료 문서 또는 전담기관 양식)을 통보
- 2) 정산서류 제출 시, 통보 공문을 포함한 변경내역 제출

■ 수행기관 자체승인 절차

- 1) 수행기관 내부변경 승인
- 2) 정산서류 제출 시, 변경내역 제출

■ 전문기관 사업(사업비)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 절차

- 1) 전문기관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공문 및 변경내역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
- 2) 시스템 상의 변경내역 승인 및 반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
- 3) 승인완료 후, 수행기관 내부변경 승인 추가 진행(사전승인 사항일 경우)

3. 부처별 승인 및 통보 내역

변경구분	변경사항	변경내용	과기부 교육부		산 통부	농 림부	농 진청	환 경부	국 토부	중 기청	복 지부	식 약처	
			이 공	인 문									
전문기관 사전승인	예산	신규채용 중소기업소속 연구원 인건비 당초계획대비 감액	○			○	○	○	○	○	○		
		위탁연구개발비 당초계획대비 20%이상 증액	○			○	○	○	○	○	○		
		사업비 이월	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		시작품(시제품) 제작비의 전용					○						
		국외여비 신설					○		○				
		국외여비 당초계획대비 30%이상 증액					○						
		국외여비 당초계획대비 20%이상 증액							○			○	
		비목 간 20%이상 전용								○			
		내·외부인건비 간 전용								○			
		경비와 인건비 간 전용										○	
		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증액									○		
		위탁연구개발비 당초계획대비 증액·감액									○		
		시험분석·임상(비임상)시험비 변경										○	
		100만원 초과 도서구입비											○
	연구계획	주관기관 변경	연구수행 목표 또는 내용 변경	공통									
연구기간 변경													
연구책임자 변경													
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변경													
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(일반연구자지원사업)			○										
공동연구원 변경		건당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 변경		○							○		
		계획서에 미 계상된 연구시설·장비 구입			○					○			
		국외출장 계획 변경					○						
		전문기관 통보	예산	사업비 이월	○	○							
				인건비 당초계획대비 20%이상 증액	○								
사업비 변경				○	○	○	○	○	○				
연구계획	수행기관 주소, 대표자, 명칭 변경			○	○								
	참여연구원 변경			○	○	○	○		○				
자체승인	예산	사업비 변경	○	○							○	○	
	연구계획	참여연구원 변경	○	○					○		○	○	

4. 이자 산입 및 사용 방법

■ 이자 금액 산출

- 1) 과제별 단독계좌 사용 사업 ☞ 통장 실 발생이자 금액
- 2) 통합관리계좌 사용 사업 ☞ ERP상의 과제별 이자조회 후 일반대체결의서(이자수입)

■ 이자 사용

- 1)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연구성과의 창출지원·보호·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며,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해당 과제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
- 2) 미사용 이자 및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는 전문기관에 반납하며, 1만원 이하의 이자는 반납 의무 없음.
- 3)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산입하여 사용
- 4) 정산보고 시, 발생이자 및 사용이자 보고
- 5)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

■ 예외 사항

- 1)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실시간 청구하여 받는 사업은 이자가 없음 (RCMS, 서울산업진흥원, 중소벤처기업부)
- 2) 산림청 ☞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이자사용 가능
- 3) 식품의약품안전처 ☞ 회의비로 산입·사용 불가